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10. 26 선고 2022가단321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표

변 론 종 결 2022. 9. 7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6.

주 문

1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0. 8. 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8. 6. 접수 제28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에게 2012. 2. 20. 20,000,000원, 2012. 5. 12. 12,000,000원을 각 대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20. 8. 14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소21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위 법원은 2021. 1. 20. C이 원고에게 20,874,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피고가 1/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, C은 2020 8. 6.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,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.

라.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/2 지분 외에 실질적으로 적극재산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은 없는 상태였고,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),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12526 판결,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자신의 처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, 이는 채권자의

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택순

부동산 표시

1. 강릉시 E 잡종지 826.2㎡

2. 강릉시 E

[도로명 주소] 강릉시 F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2층 자동차관련시설

1층 82.86㎡, 2층 72㎡. 끝.

